
2024년 대구사이버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

2024. 2



대구사이버대학교
DAEGU CYBER UNIVERSITY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1
1. 목표 및 기본방향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6
1. 재난	6
① 자연재난	6
② 사회재난	13
2. 안전사고	15
① 대학 안전사고	15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24
3. 감염병 확산	28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8
4. 범죄	34
① 일반범죄	34
② 성범죄	39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43
① 산업재해	43
② 중대재해	50
6. 기타	57
①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57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59
IV.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63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71
VI.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5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76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77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78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과제

1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4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목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 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 분	주요 법률
1. 재난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6. 비상사태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방침

-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의무 이행사항으로 규정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이버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동영상, 교육자료 탑재)위주의 교육훈련 시행
 - 학생은 온라인 위주의 교육 시행
 - 교직원 대상 실습(심폐소생술 등) 방안 모색

□ 수립 절차

- **(계획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
- **(계획게시·제출)** 학교의 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현황

□ 일반 현황

학교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전화	053-859-7500	FAX	053-859-7599	홈페이지	www.dcu.ac.kr
총장	이근용	총괄안전관리 책임자(관)		이근용(총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2023.4.1.자 기준)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석사)	합계	비고
	4,422	107	4,529	

교직원 (명)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직원	조교	기타	합계
	25	217	46	16	-	304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② 조직체계 현황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대학본부	기획예산팀, 총무팀
1. 재난	자연재난	기획예산팀	
	사회재난	기획예산팀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총무팀	
	교육시설안전	총무팀	
3. 감염병	코로나 19	기획예산팀	
4. 범죄	성범죄	총무팀	
	일반범죄	총무팀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총무팀	
	중대재해처벌법	총무팀	
6. 기타	비상사태	기획예산팀	
	침해사고	기획정보팀	

□ 비상 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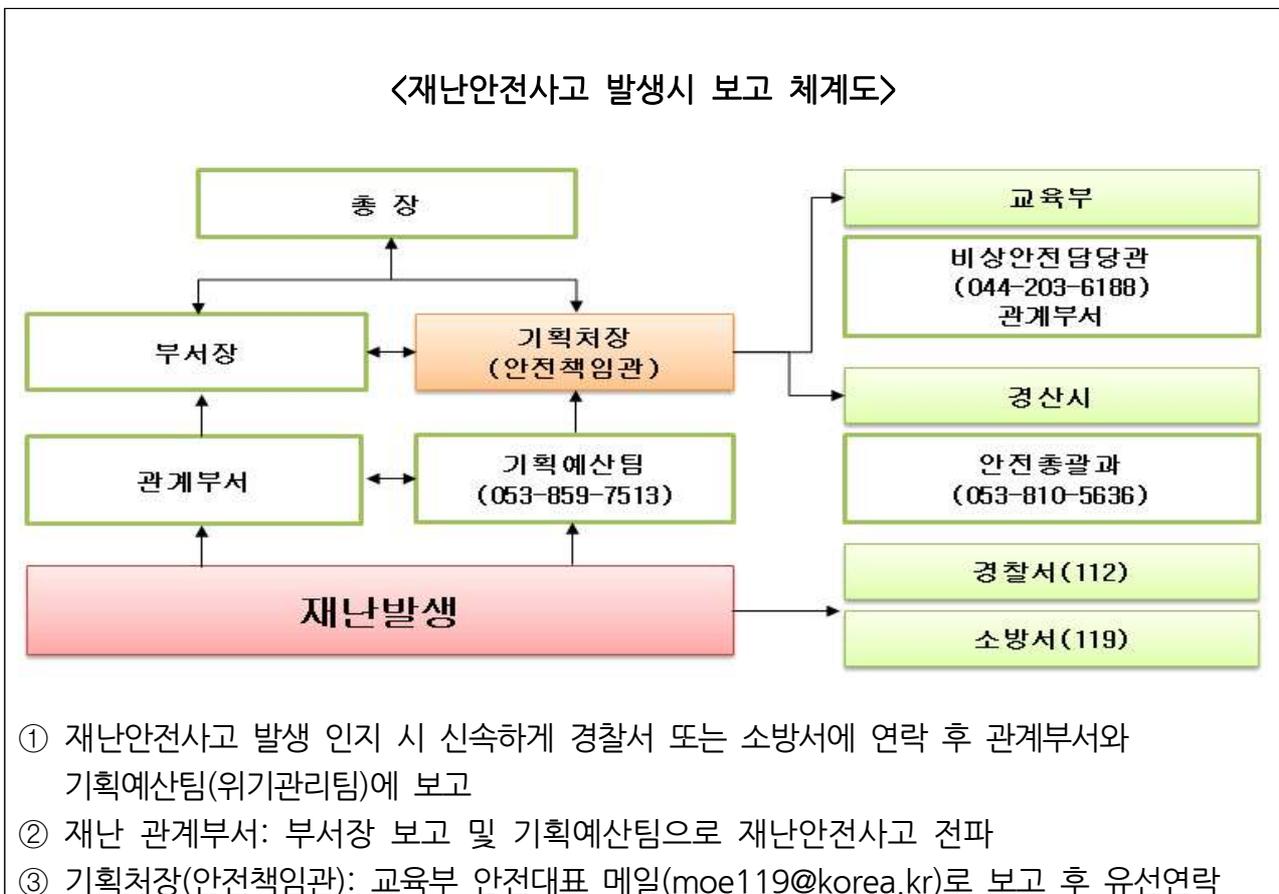
부서명	직책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총장실	총장	이근용	053-859-7501	
대학원	원장	한지연	053-859-7420	
기획처	처장	박상희	053-859-7510	
교무처	처장	윤은경	053-859-7530	
입학학생처	처장	전종국	053-859-7550	
사무처	처장	도진우	053-859-7560	
기획예산팀	팀장	김동현	053-859-7511	
기획정보팀	팀장	공석훈	053-859-7401	
교학팀	팀장	차재순	053-859-7531	
콘텐츠개발팀	팀장	김소현	053-859-7581	
입시홍보팀	팀장	박기홍	053-859-7521	
학생팀	팀장	손근희	053-859-7551	
총무팀	팀장	김경희	053-859-7561	
재무팀	팀장	손정훈	053-859-7571	

3. 대학안전관리 체계

가. 목적

- 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 수립
-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을 통한 책임의식 고취 및 해당분야 전문성 확보
- 재난 유형별 대응능력 제고 및 피해 최소화 도모

나.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체계



<교육부로 보고해야 하는 재난·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 사고: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다. 재난안전관리 체계

-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대구사이버대학교 비상계획운영지침”에 의거 재난대책 상황실을 운영
- 위기단계 중 경계단계 발령 시점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적용
- 재난대책 상황실 편성은 다음과 같음



- 재난대책 상황실의 임무는 다음과 같음

분야별	임무
재난대책상황실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 업무 총괄 ○ 복구정책 결정과 방송, 미디어 등 언론대응 ○ 대응 및 복구단계의 진행 현황을 종합하고 지시사항을 각 기업, 기관 및 관련 팀에 전달
위기관리팀 (위기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대학교 내 주요간부 및 본 대학교분야 위기관리담당자 비상대기 및 비상연락망 가동 ○ 유관기관 등 관계기관 상황접수 및 전파·확인
비상지원팀 (일반보안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보안관리 및 방호계획의 수립·시행 ○ 전기설비, 항온항습, 소화설비 등 비상운영
서비스대응팀 (정보보안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및 소프트웨어 기능상태 파악/피해 정보수집 ○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복구/점검
통신망대응팀 (정보보안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통신장비의 피해현황 파악/온라인 환경 복구/점검
보안사고대응팀 (정보보안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보안관리정책 및 지침 재난대책위원회에 제공 ○ 보안관제시스템 비상운영 ○ 해킹 등 위기대응 및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구성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 담당부서 및 주요임무

담당부서	구분	성명	연락처	주요임무
기획예산팀	팀장	김동현	053-859-7511	업무총괄, 유관기관 보고·전파·협조
	팀원	김민정	053-859-7512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팀원	김종현	053-859-7513	관리계획 수립, 사고접수, 현장대응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 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예방교육

-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
- 재난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 홍보활동

- 사내 게시판(온라인)을 활용하여 재난안전관련 홍보물 게시

○ 재난대응훈련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대학 구성원 대상의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 및 재난단계별 보고·전파
- 재난 발생 시 담당 부서 및 실무자(접수 및 현장대응) 지정 관리

○ 재난 발생 시 대응방안

- 재난발생 시 담당부서로 신고 및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신고
- 비상연락망을 통한 재난 상황 전파 및 필요 시 대피 명령
 - ※ 대피로 및 대피장소 안내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담당부서에서는 재난상황 보고·전파 체계 가동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moe119@moe.go.kr)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로 보고 후 유선연락
- 교육부 상황보고 및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 재난상황 보고

-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보유 자원(캠퍼스 시설 등) 공유 및 관련 내용 제공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 피해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피해신고)

○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 사망자 대책
- 구호활동

○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공통자료] 재난대응·복구 체계·절차



[공통자료] 재난안전관리 단계 구분

- ❖ **(예방)** 재난·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재난·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재난안전법」제4장 재난의 예방(제25조의2~제33조의3) 관련
- ❖ **(대비)** 재난·사고 발생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난·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재난안전법」제5장 재난의 대비(제34조~제35조) 관련
- ❖ **(대응)**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재난안전법」제6장 재난의 대응(제36조~제57조) 관련
- ❖ **(복구)** 재난·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재난·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안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재난안전법」제7장 재난의 복구(제58조~제66조의3) 관련

② 사회재난

□ 담당부서 및 주요임무

담당부서	구분	성명	연락처	주요임무
기획예산팀	팀장	김동현	053-859-7511	업무총괄, 유관기관 보고·전파·협조
	팀원	김민정	053-859-7512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팀원	김종현	053-859-7513	관리계획 수립, 사고접수, 현장대응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 :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예방교육**
 -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사회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
 - 재난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 **홍보활동**
 - 사내 게시판(온라인)을 활용하여 재난안전관련 홍보물 게시
- **재난대응훈련**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 소화기·소화전 사용방법 교육, 모의 대피훈련 실시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대학 구성원 대상의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 정기점검 실시

-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 관리
- 건물에 대한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 및 재난단계별 보고·전파
- 재난 발생 시 담당 부서 및 실무자(접수 및 현장대응) 지정 관리

○ 재난 발생 시 대응방안

- 재난발생 시 담당부서로 신고 및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신고
- 비상연락망을 통한 재난 상황 전파 및 필요 시 대피 명령
 - ※ 대피로 및 대피장소 안내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담당부서에서는 재난상황 보고·전파 체계 가동
-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보유 자원(캠퍼스 시설 등) 공유 및 관련 내용 제공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 피해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피해신고)

○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 사망자 대책
- 구호활동

○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및 주요임무

담당부서	구분	성명	연락처	주요임무
총무팀	팀장	김경희	053-859-7561	업무총괄, 유관기관 보고·전파·협조
	팀원	신다진	053-859-7562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팀원	박상봉	053-859-7563	관리계획 수립, 사고접수, 현장대응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피해현황 :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교통안전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 집단활동 안전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해외 학생 집단연수를 기획하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의 탐색·평가·관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집단연수 4주 전까지 학생처에 제출
 - * (포함사항) 방문지역, 수행 활동, 인솔자와 참가자 등
- 현장실습 안전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예방 관리

- 현장실습 참여학생 근로문제 예방 및 권익보호 강화

○ 생활 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강의실, 강당/체육관, 도서관(실), 미술/음악/무용실, 주방/식당, 사무실/작업·실습실/회의실, 공용공간(현관/복도/계단/화장실), 체육장, 옥외 공간(조경/수경시설), 옥외 조형물 등

- 교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사고 등급에 따른 보고 기준

- (심각) 학교장 및 교육부에 지체없이 보고
- (경계) 학교장 및 교육부에 신속하게 보고 (1시간 이내)
- (주의) 학교장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 (근무일 기준 1일 이내)
- (관심)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내부 관련 문서에 기록·관리

※ 자동적으로 '심각' 등급을 받는 사고(또는 위급상황)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이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대학안전사고

관 리 지 침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 담당부서 및 주요임무

담당부서	구분	성명	연락처	주요임무
총무팀	팀장	김경희	053-859-7561	업무총괄, 유관기관 보고·전파·협조
	팀원	신다진	053-859-7562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팀원	박상봉	053-859-7563	관리계획 수립, 사고접수, 현장대응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로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 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대학본부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수검하며, 특히,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수검
-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대면활동 자제

- 학생지도 및 집합회의등 각종 대면활동 자제

<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수칙 >

1.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쉬니다.
2. 의료기관 진료가 있으면 사전에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하여 주십시오.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 시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5.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7.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8.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거리두기(2m)를 하세요.
9.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세요.
10.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세요.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9-5-1판(21.4.12.)

○ 확진확자 발생 시 대응·조치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의심증상 확인 시 선별진료 방문진료·검사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
- 외부인(방문객)의 건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후 허가(출입 등록대장 작성·관리)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실내)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마련 (실외) 외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참고자료]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발생규모	이동 경로	⇒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 이동 경로 불명확	⇒	
복수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 이동 경로 불명확	⇒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및 현장 방역 여건에 따라 결정

4. 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일반범죄

□ 담당부서 및 주요임무

담당부서	구분	성명	연락처	주요임무
총무팀	팀장	김경희	053-859-7561	업무총괄, 유관기관 보고·전파·협조
	팀원	신다진	053-859-7562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팀원	박상봉	053-859-7563	관리계획 수립, 사고접수, 현장대응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피해현황 :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대학생들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
- 신변위협에 대한 행동요령 마련 및 홍보
- 음주, 흡연, 마약류 사용 등에 관한 규제와 교육 프로그램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 범죄 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EPTED) 기법 적용

-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 (접근통제)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정 하게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
- (영역성 확보)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활동의 활성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이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공통자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비전·목표 참조

비전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		
목표	“원상회복”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연속적 지원서비스 제공	“실질적 참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	“평온하고 안전한 삶으로 복귀” 신변 및 정보보호를 통한 2차피해와 재피해 예방
추진 정책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정책기반 강화 	

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 담당부서 및 주요임무

담당부서	구분	성명	연락처	주요임무
총무팀	팀장	김경희	053-859-7561	업무총괄, 유관기관 보고·전파·협조
	팀원	신다진	053-859-7562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팀원	박상봉	053-859-7563	관리계획 수립, 사고접수, 현장대응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피해현황 :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성희롱 행위)** 성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구축·운영

-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예방과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참고자료]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단계 구분

- ❖ (상담) 사건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신체·심리·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이며, 실무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
- ❖ (조사) 관련근거, 조사개시, 서류제한 기한, 조사대상 및 출석통지, 사건처리절차, 당사자의 권리 등에 대해 담당기구에 사건 신고를 접수·고지 및 조사하는 단계
- ❖ (심의) 사실관계, 행위의 심각성, 피해범위 및 영향 등에 대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징계·조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미비 사항·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추진

[참고자료]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1.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기관명), '21.○.○ (작성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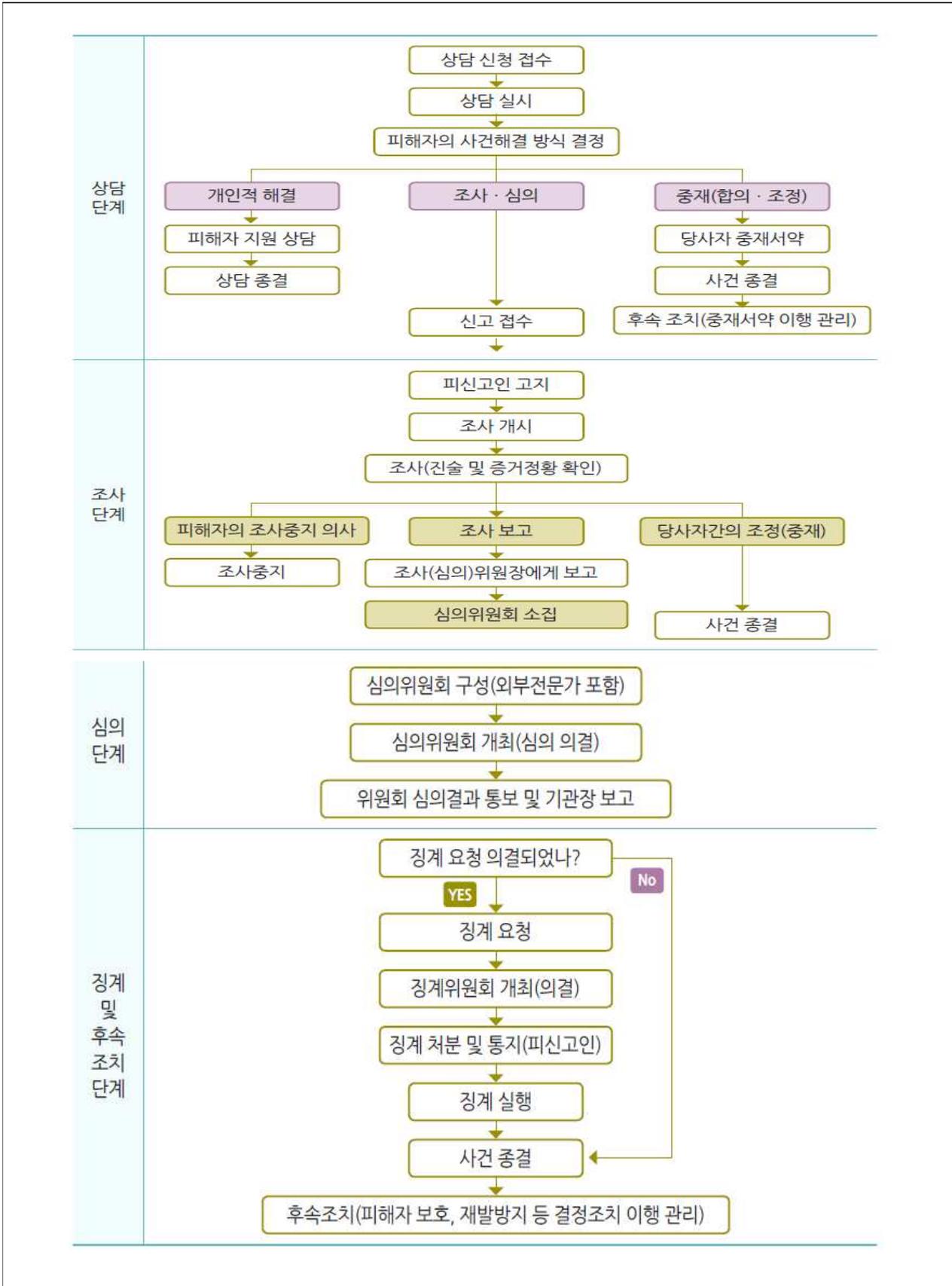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 사건 개요

발생일	년 월 일	사건접수일 (인지시점)	년 월 일	사건 유형	1:1/多:1/1:多/ 불투경다수
사건 발생기관명	○○○학교 / ○○시 ○○구		기관유형	국가기관 / 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학교	
가해자 - 피해자 관계	상급자-하급자/ 하급자-상급자/동료/사제/ 기타/확인불가 등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남성 - 남성 남성 - 여성 여성 - 남성 여성 - 여성 확인 불가	○
특이사항	국가기관외 경찰, 사·도·지사, 시·군·구·청장, 교육감에 의한 사건인가 피해자가 다수인가 피해 중재 위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기관 신고 여부(신고시 신고일)				○
사건개요	유사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기관 조치사항	유사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위자·피해자 신상정보(비밀번호,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참고자료]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참조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우리대학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별도의 세부 추진계획 미수립

①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 담당부서 및 주요임무

담당부서	구분	성명	연락처	주요임무
총무팀	팀장	김경희	053-859-7561	업무총괄, 유관기관 보고·전파·협조
	팀원	신다진	053-859-7562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팀원	박상봉	053-859-7563	관리계획 수립, 사고접수, 현장대응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 : 없음

② 중대재해

□ 담당부서 및 주요임무

담당부서	구분	성명	연락처	주요임무
총무팀	팀장	김경희	053-859-7561	업무총괄, 유관기관 보고·전파·협조
	팀원	신다진	053-859-7562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팀원	박상봉	053-859-7563	관리계획 수립, 사고접수, 현장대응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피해현황 : 없음

6. 기타

① 비상사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5 등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3조의5 등

□ 담당부서 및 주요임무

담당부서	구분	성명	연락처	주요임무
기획예산팀	팀장	김동현	053-859-7511	업무총괄, 유관기관 보고·전파·협조
	팀원	김민정	053-859-7512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팀원	김종현	053-859-7513	관리계획 수립, 사고접수, 현장대응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피해현황 :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계획 등 수립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합동상황실 구성·준비(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등 점검)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화재보험)
공통	대학	교직원복지보험 (현대단체상해보험II)	화재보험(DB손해보험)
	서울학습관		퍼펙트 비즈니스 플러스 종합보험(AIG)
	대구학습관		화재보험(한화손해보험)

□ 가입현황 및 보상한도

(단위: 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가입대상	1인당 보상한도액	보장/공제금액
2023	현대단체 상해보험	2023.11.15. ~2024.11.14.	전체 교직원 (계약직 및 조교 포함)	상해사망(사립학교 교직원)	30,000,000
				상해후유장해(사립학교 교직원)	100,000,000
				특정 암 진단 - 남: 위암, 간암, 폐암 - 여: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20,000,000
				암 진단 - 이반암 최초 진단: 2,000만원 - 갑상샘암, 경계성종양 최초 진단: 600만원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최초 진단: 400만원	20,000,000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20,000,000
				급여의료비(입원)	30,000,000
				급여의료비(통원)	150,000
				비급여의료비(입원)	30,000,000
				비급여의료비(통원)	150,000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담보 특별약관	-
				비급여 주사료 담보 특별약관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담보 특별약관	-

(단위: 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가입대상	담보내역	보장/공제금액
2023	퍼펙트 비즈니스 플러스 종합보험	2023.10.21. ~ 2024.10.21	일반시설	시설소유 대인 1인당 보상한도액	100,000,000
				시설소유 대인 1사고당 보상한도액	500,000,000
				시설소유 대인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0,000
				시설소유 대물 1사고당 보상한도액	100,000,000
				시설소유 대물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0,000
				구내치료비 대인 1인당 보상한도액	1,000,000
				구내치료비 대인 1사고당 보상한도액	5,000,000

2. 교육시설 안전보험 가입현황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화재보험 (본관)	2022.09.01.~ 2023.08.31.	0	4953.72㎡	1,366	0	0	0	0	
2022	화재보험 (서울캠퍼스)	2022.12.01.~ 2023.12.01.	180	1624.66㎡	212					
2022	화재보험 (대구캠퍼스)	2022.12.01.~ 2023.12.01.	21	182.24㎡	86					
2023	화재보험 (본관)	2023.09.01.~ 2024.08.31.	512	4953.72㎡	1,489	0	0	0	0	
2023	화재보험 (서울캠퍼스)	2023.12.01.~ 2024.12.01.	191	1624.66㎡	228	0	0	0	0	
2023	화재보험 (대구캠퍼스)	2023.12.01.~ 2024.12.01.	32	182.24㎡	91	0	0	0	0	

(단위: 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면적	구분/등록금액	
				구분	등록금액
2023	화재보험 (DB손해보험)	2023.09.01.~ 2024.08.31.	4953.72㎡	건물	7,829,127,029
				집기비품	14,997,348,792
2023	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2023.12.01.~ 2024.12.01.	1624.66㎡	건물	1,969,280,000
				집기비품	79,632,610
				시설인테리어	230,247,167
2023	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2023.12.01.~ 2024.12.01.	182.24㎡	건물	220,896,000
				집기	329,073,383

1. 재난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부서	구분	성명	연락처	주요임무
기획예산팀	팀장	김동현	053-859-7511	업무총괄, 유관기관 보고·전파 협조
	팀원	김민정	053-859-7512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팀원	김종현	053-859-7513	관리계획 수립, 사고접수, 현장대응

□ 추진목적 및 기본방향

-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재난안전교육 실시
-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재난발생시 대응능력 제고
- 현장체험(현장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 주요내용

- 각종 재난·안전사고별 모의 훈련 실시
 - 침해사고 대응훈련 : 사이버대학의 특성을 감안하여 침해사고(해킹 등) 발생시 대응 훈련 실시
 - 각종 재난(풍수해, 지진 등) : 각 재난·안전 지정부서의 임무 확인 및 매뉴얼 준수여부, 비상연락망 점검, 구성원의 대피 및 대응훈련(대피장소 지정) 등
 - 각종 안전사고 : 안전사고 시 대처 매뉴얼 준수여부, 비상연락망 점검 및 구급의약품 비치 등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대회 개최
 - 대상자 : 내부 교직원
 - 관련 교육 후 대회 개최 및 우수자 포상
 - 필요 시 유관기관 또는 전문가 협조 요청
- 재난·안전관리 퀴즈대회 개최
 - 대상자 : 우리대학 학생
 - 온라인 참여를 통해 실시

- 우수자 기념품 제공
- 유관기관 및 제도연계를 통한 모의 훈련 실시
 - 유관기관의 관련 훈련 실시 시 시행 (민방공 대피훈련, 안전한국훈련 등)
- 각종 감염병(코로나19) 예방관리 훈련 실시
 -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위생 준수,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 등 보건지침 전달
 - 교내 정기 방역 소독 실시
 - 전담부서 지정 및 관련 대응 지침 마련
- 비상연락망 가동 훈련
 - 재난·안전 사고내용의 신속한 전달, 연락처 변경 사항 점검 등을 위한 훈련실시
 - 휴대전화 일괄 문자발송 서비스를 활용하여 재난사항 발생 안내 및 대피를 위한 모의 훈련실시
- 지속적인 교육 실시
 - 상하반기 진행되는 교직원 정례회 개최 시 단계별 대응 체계 및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안내

□ 시행시기

항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비고
모의훈련													2회
교육													수시
시설안전 점검													분기
응급처치 대회													1회
퀴즈대회													1회
침해사고 대응훈련													1회

□ 소요예산

분야	세부내용	금액(원)
각종 교육	- 재난 및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교육	500,000
각종 훈련	- 각종 재난·안전사고 모의 훈련 장비	1,000,000
각종 대회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대회 - 재난·안전관리 퀴즈대회	500,000
합계		2,000,000

2.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팀	팀장	김경희	053-859-7561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팀원	신다진	053-859-7562	
팀원	총무팀	팀원	박상봉	053-859-7563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2023.08.25.	1시간	30명	
교직원	2023.11.02.	1시간	77명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2024.12.(예정)	1시간	90명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추진
협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3.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등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팀	팀장	김경희	053-859-7561	교직원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팀원	신다진	053-859-7562	
팀원	총무팀	팀원	박상봉	053-859-7563	
팀장	학생팀	팀장	손근희	053-859-7551	학생 주관부서
팀원	학생팀	팀원	고재휘	053-859-7525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3.07.18.~12.31.	2시간	2,182명	400,000
교직원	2023.05.15.~07.28.	4시간	88명	
	2023.11.02.	1시간	77명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예방, 성폭력예방, 성매매예방, 가정폭력예방 교육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1	4,500명	
교직원		1	90명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폭력예방교육	▪ 양성평등, 성인지 교육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년 2회 이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재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경산경찰서	053-770-0330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산소방서 (진량119안전센터)	053-819-6250 (053-856-0119)		119재난대응과
한국전기안전공사	053-288-0300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53-719-4109		대구광역본부
한국전력공사	053-810-4232		경산전력지사
경산중앙병원	053-715-0119		응급실
경산시 보건소	053-810-6302		보건행정과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부서명	전화번호	
대구사이버대학교 재난대책상황실	기획예산팀	053-859-7511	
	기획정보팀	053-859-7401	
	총무팀	053-859-7561	

□ 안전사고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경산경찰서	053-770-0330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산소방서 (진량119안전센터)	053-819-6250 (053-856-0119)		119재난대응과
한국전기안전공사	053-288-0300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53-719-4109		대구광역본부
한국전력공사	053-810-4232		경산전력지사
경산중앙병원	053-715-0119		응급실
경산시 보건소	053-810-6302		보건행정과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부서명	전화번호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기획예산팀	053-859-7511	
	기획정보팀	053-859-7401	
	총무팀	053-859-7561	

□ 감염병 확산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교육부	044-203-7146		
경산시 보건소	053-810-6313		감염병관리팀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부서명	전화번호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기획예산팀	053-859-7511	대구사이버대학교

□ 범죄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법무부 스마일센터(대구)	053-745-1295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1577-1295		
해바라기센터	1366		
진량파출소	053-853-0112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부서명	전화번호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총무팀	053-859-7563	대구사이버대학교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경산소방서 진량119안전센터	053-856-0119		
경산진량보건지소	053-852-8328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054-338-7575		응급실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부서명	전화번호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총무팀	053-859-7563	대구사이버대학교

□ 비상사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교육부	044-203-6368		
경산시청	053-810-5578		
경산소방서	053-819-6250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부서명	전화번호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기획예산팀	053-859-7511	
	기획정보팀	053-859-7401	
	총무팀	053-859-7561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담당부서	구분	성명	연락처
1. 재난	① 자연재난	기획예산팀	팀장	김동현	053-859-7511
			팀원	김민정	053-859-7512
			팀원	김종현	053-859-7513
	② 사회재난	기획예산팀	팀장	김동현	053-859-7511
			팀원	김민정	053-859-7512
			팀원	김종현	053-859-7513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총무팀	팀장	김경희	053-859-7561
			팀원	신다진	053-859-7562
			팀원	박상봉	053-859-7563
	② 교육시설안전사고	총무팀	팀장	김경희	053-859-7561
			팀원	신다진	053-859-7562
			팀원	박상봉	053-859-7563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기획예산팀	팀장	김동현	053-859-7511
			팀원	김민정	053-859-7512
			팀원	김종현	053-859-7513
4. 범죄	① 일반범죄	총무팀	팀장	김경희	053-859-7561
			팀원	신다진	053-859-7562
			팀원	박상봉	053-859-7563
	② 성범죄	총무팀	팀장	김경희	053-859-7561
			팀원	신다진	053-859-7562
			팀원	박상봉	053-859-7563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총무팀	팀장	김경희	053-859-7561
			팀원	신다진	053-859-7562
			팀원	박상봉	053-859-7563
	② 중대재해	총무팀	팀장	김경희	053-859-7561
			팀원	신다진	053-859-7562
			팀원	박상봉	053-859-7563
6. 기타	① 비상사태	기획예산팀	팀장	김동현	053-859-7511
			팀원	김민정	053-859-7512
			팀원	김종현	053-859-7513
	② 침해사고	기획정보팀	팀장	공석훈	053-859-7401
			팀원	김태형	053-859-7402
			팀원	권기표	053-859-7404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발생건 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② 사회재난	발생건 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발생건 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② 교육시설안전사고	발생건 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감염자 수	0	0	4	48	9	12.2	
		인명피해(사망)	0	0	0	0	0	0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0	0	0	0	0	0	
		피해자 수	0	0	0	0	0	0	
	② 성범죄	발생건 수	0	0	0	0	0	0	
		피해자 수	0	0	0	0	0	0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건 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② 중대재해	발생건 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6. 기타	① 비상사태	발생건 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② 침해사고	발생건 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